

'91 축산정책 어떻게 펼쳐지나?

홍 보 부

정부는 금년도에 국비 2백6억5천만원, 지방비 22억원, 축산진흥기금 3천1백24억1천6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 97억 8천 5백만원 등 총 3천4백 50억5천1백만원을 투입, 축산관련사업을 집행 또는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예산은 '90년보다 28.2% 증가된 금액이다.

정부는 특히 금년도에 축산구조개선과 축산 폐수처리시설설치를 집중 지원키로 하고 구조 개선에 755억, 축산폐수처리에 319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91년 축산정책목표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업을 농가주 소득원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정착 ▲ 축산업의 구조개선추진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축산물 유통개선 지속 추진 ▲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사료수급안정 ▲ 축산공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1년도의 육류소비량을 쇠고기 18만 2천톤, 돼지고기 51만 9천톤, 닭고기 17만8천톤, 계란 41만 2천톤, 우유 2백만 7천톤으로 추정하고, 한우 1백 70만 1천두, 젓소 52만 8천두, 돼지 4백 97만두, 닭 8천 76만3천수를 사육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벌일 '91주요축산사업계획을 양돈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1 축산사업자금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 비	지방비	축진기금	농어촌 발전기금
합 계	345,051	20,650	2,200	312,416	9,785
1. 사업지원	184,300	4,147	1,158	169,210	9,785
• 가축개량	19,962			19,962	
• 축산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향상	75,540			66,455	9,085
• 유통구조개선	42,251			41,551	700
• 사료의 안정적공급	4,654	760	487	3,407	
• 축산폐수처리	31,950			31,950	
• 가축방역및검역	3,334	2,663	671		
• 지역조합경제 사업지원	3,800			3,800	
• 기타	2,809	724		2,085	
2. 양축자금	10,000	10,000			
3.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140,230			140,230	
• 축산물수급	73,230			73,230	
•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운용	67,000			67,000	
4. 축산행정관리비	8,556	6,503	1,042	1,011	
5. 예비비	1,965			1,965	

축정과 소관사업

1. 양축자금지원 : 재정자금 400억원, 한은차입금 650억원을 축협자금 1,150억원 등 총 2,200억원을 전부업 양축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리 5%, 대출기간 1년, 가구당 400만원 이내.

2. 축산진흥대회 개최 : 각 도지사 주관으로 9~10월중에 도별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한다.

3.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 해외연수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축산행정, 유통 등 5개 분야에 각 20명씩 100명을 2주간 선진외국에 파견,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양돈농가는 9월중에 영국과 덴마크에 파견한다.

축산경영과 소관사업

1. 경영지표 설정 : 축산경영개선을 위해 가축별 경영지표를 설정하여 95년까지 30%의 생산비를 절감한다. 돼지는 2000년대에 500~1,000두를 가족중심 전업규모로 설정, 전업규모 이상에서 95년 이후에 50%를 사육토록 한다.

2. 축산업 구조개선 : 부업규모 축산을 가족단위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계속 금지하고 전·부업규모(모든 500두 미만)는 국내공급을, 기업규모(모든 500두 이상)는 수출규격돈을 생산토록 해 사육규모별 역할을 분담한다.

3. 축산경영진단사업 : 각 도지사 주관으로 축종별 경영진단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

학계·행정기관·연구기관·농가대표 등으로 경영진단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금년 3월까지 경영일지 10만부를 제작·배부한다.

4. 전업규모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모델 개발 : 우리나라 기후 및 축종별 생리조건에 적합한 전업규모축사 및 분뇨처리시설모델 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전업규모를 돼지는 500~1,000두로 설정한다.

5. 돼지·닭 계열화 사업 : 150억원을 투입, 돼지·닭 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돼지의 계열화생산사업자는 총 사육두수 3만두 이상, 계열농가 30~60호, 농가당 사육규모 모든 50~100두 규모를 갖춘 자로 선정하고 6개 업소에 2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6. 축사시설개선사업 : 소 50두, 돼지 2천두, 닭·오리 3만수 이하의 사육농가 1,500개소에 4백 49억 8천 5백원을 융자,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호당 3천만원 이내이며, 자동급이·급수시설·환기시설·분뇨수거 및 처리시설·축사신축 및 개증축 등에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시·도에 하면 된다.

7. 축산단지조성사업 : 금년에 3개소의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당 돼지는 1만두, 닭은 30만수 규모로 하며 10~20농가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단지당 15억원씩 지원한다. 입주대상농가는 돼지 모든 50~100두 규모, 닭은 2~3만수 사육규모이다.

8. 돼지능력검정사업 : 양돈협회 제1검정소와 제2검정소에서 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한다. 검

정소 검정은 제1검정소 1,200두, 제2검정소 960두를 실시하고 희망농장에 한해 자가농장검정을 양돈협회의 주관하에 실시한다.

축산물유통과 소관사업

1. 주요축산물 가격안정대 운영 :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와 돼지에 대해 가격안정대를 운영한다. 수매비축을 위해 축진기금에서 670억원을 확보한다. 돼지가격이 하한가격을 밑돌 경우 수매비축하고, 상한가격 이상 오를 경우 수매비축육(수입육 포함)을 방출한다.

91년도의 가격안정대 설정기준은 과거 5년간 농가평균판매가격×생산비증가율×(1-가격진폭률/2)로 한다.

2. 주요축산물 비축·방출·출하조절 :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8만4천톤의 쇠고기를 수입, 공급한다. 이로서 수입쇠고기가 전체 쇠고기 공급량중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축시장 운영개선을 위해 가축시장관리요령을 제정·운영한다. 돼지고기는 가격안정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수입할 계획이다.

3.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자율화 조기 정착 : 금년부터 육류 연동가격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격을 자율화 한다. 자율가격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쇠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7개 부위로 분할해 부위별로 판매한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부위별로 진열토록 하고, 부위명, 가격등을 적은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한다.

4.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 육류의 공정거래, 가축개량촉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소·돼지

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3개 도매시장에서 도체등급제를 시행한다.

소는 10개 등급, 돼지는 4개 등급으로 하고 등급검사 수수료는 소 1두당 1,500원, 돼지 300원선에서 결정한다. 도체등급제의 실시를 위해 축산진흥기금 120억원을 보조한다.

5. 축산물수출기반 조성 : 돈육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전용가공 및 처리장 1개소에 10억원을 연리 8%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또 수출돼지고기 잔여육 처리자금 30억원(1,800톤)을 수출업체에 연리 8%(조합 3%) 1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잔여육처리자금은 90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업종조합과 100톤이상 수출한 업체로 수출용 규격돈을 계획물량의 50% 이상 양돈농가와 1년이상 장기계약한 업체로 한다.

6. 도축장시설 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 : 도별 축산물유통 경제권역별로 도축장 권역화(근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축장의 식육유통센터화로 기능을 강화한다.

도축장시설근대화를 위해 5개소에 25억원, 식육유통센터 2개소에 10억원을 융자한다.

7. 축산물 공판장 건설 : 산지와 연계한 대소비지의 육류 수급 원활을 위해 고령과 제주에 축산물공판장을 신규로 설치한다.

8.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 축산물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금년에 20개소의 축산물 종합공판장을 설치한다. 축산물 종합공판장은 대도시 등 대량소비지역내에 설치하고, 이곳에서는 육류(소, 돼지, 닭)와 부산물, 육·유가공품, 벌꿀, 계란 등을 취급한다.

초지사료와 소관사업

1. 사료수급 : 사료원료의 수입한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합사료와 원료의 수입자유화 확대, 사료원료 다양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료용 곡물의 수입한도량은 수입자유화 확대에 따라 옥수수, 루핀시드로 축소할 방침이다.

2. 사료품질관리 : 배합사료공장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축산계열화단지의 자가배합사료공장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사료제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생산시설 안전자동화를 유도한다. 그밖에 국내 제조사료와 수입사료의 검사를 강화하고, 사료의 수입개방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을 중점 검사한다. 1차검정은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에서, 2차검정은 농진청 축산시험장에서 실시한다. 금년도에 배합사료(수입사료, 대용유 포함) 5,600점, 단미사료(수입사료, 보조사료 포함) 1,700점, 수입사료곡물 130점(모선별(母船別)) 등 총 7,430점을 검사한다.

가축위생과 소관사업

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45,000건에 대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다. 시료는 도축장 등에서 채취하고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잔류할 경우 양축농가 계도 및 폐기처분한다. 잔류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다.

2. 축산폐수 처리사업 : 법적규제 이하의 농가에게 간이정화시설(간이저장조, 톱밥발효돈

사, 건조장 등) 자금을 융자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에게는 정화시설(저장액비화, 톱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구입비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즉 금년에 간이저장조 11,500개소, 정화시설 1,000개소, 분뇨운반장비 50개소, 축분발효시설 3개소 등에 3백19억5천만 원을 융자 또는 보조해 준다. 간이저장조는 1개 농가당 3백만원, 정화시설은 1천만원씩 지원해 줄 예정이며, 간이저장조는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정화시설을 연리 7%,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다.

3. 돼지오제스키병 근절대책 : 양돈장에 대한 돼지오제스키병의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돈을 색출 도태하고,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 조기근절토록 한다.

종돈장에 대해선 연2회(5~6월, 9~10월) 10,000두를 검사하고, 허가·등록양돈장, 또는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은 연1회 59,400두를 검사한다. 도축장 출하돼지는 연4회 93,600두를 추적 조사한다.

4. 동물 및 축산물검사강화 : 수입개방화 추세 및 교역상대국 다변화에 따라 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HPLC 검사장비 등 18종 34대를 도입한다.

또한 배합사료공장과 양돈장, 수출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유해물질 잔류가 없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수출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성장호르몬제, 유해금속 잔류를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반송 및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